

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

성명		생년월일	
중독 환각물질류			
당초 치료 예정 기간			
연장 기간			
연장 이유			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4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8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장:

서명 또는 인

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